

중소제조업체 PL관련 사고 '무방비'

〈사례〉

지난해 A씨는 새로 문을 연 사무실에 B사의 전기 냉온수기를 구입해 설치했다. 그런데 설치한 다음 날 갑자기 화재가 발생, 내부시설과 집계일체가 불에 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.

냉온수기가 위치한 곳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전기 냉온수기의 내부 히터부에 설치된 배선 연결부의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. 사무실 콘테이너와 집기류 등을 포함, 총 681만 7,000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났는데 다행히 B사는 PL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사를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.

제조물책임(PL)법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 후 PL관련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PL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.

특히 PL법 전격 시행과 함께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을 교환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권리 주장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중소 제조업체들의 대응은 주먹구구 식인 실정이다.

최근까지 접수한 "PL관련 사고현황"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년 동안 42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254건에 비해

약 166% 늘어난 것.

사고 유형별로는 PL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결합 중에서도 ■설계상 결함 ■표시상 결함 ■제조상 결함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가전제품이 38%로 수위를 차지했고 식음료품(9.7%), 스포츠용품(9.4%) 순이다.

그나마 PL사고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전체의 5.6%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. 90%가 넘는 대다수 업체들이 PL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실에서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요구금액도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.

중소기업PL 단체보험"에 가입한 업체만해도 최근 2년 동안 4,000여개 정도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"이라며 "단체가입을 하면 개별가입보다 28% 정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

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과 미흡한 대응 태도라고 할 수 있다. "PL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"며 "실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의식을 갖고 결함 최소화에 힘을 쏟는 한편 PL관련 분야에 회사 순이익의 10%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"고 지적했다.